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27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이훈기·이광희·김태선

정을호 · 김교흥 · 문정복

김태년 • 박희승 • 이병진

이성윤 • 이재강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 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증 언 등의 거부가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략하여 현행법의 증인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 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 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증언 등의 거부)"를 "(증언 등의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증인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소추의 의결 또는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 ④	제3조(증언 등의 거부 등) ① ~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증인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소추의 의결 또는 제15조
	에 따른 고발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다.